

1. 개정이유

오염물질의 수거·처리비는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수수료의 성격이 있어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에 그 징수 근거를 명시(「해양환경관리법」 법률 제18066호, 2021.4.13. 공포, 2021.10.14. 시행)함에 따라, 오염물질 수거·처리와 관련한 해역관리청 또는 해역관리청으로부터 오염물질 저장 시설의 설치·운영 등을 위탁 받은 기관에서 오염물질 수거·처리 비용을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오염물질 수거처리 비용의 산정 등(안 제83조의2)

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·운영자가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을 수거처리할 경우 징수하는 오염물질 수거처리 비용의 부과 및 징수 방법, 비용 산정 시 고려할 사항 등 세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예정

라. 기 타 : 1) 입법예고 전

2) 행정규제 : 해당 없음

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8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3조의2(오염물질 수거처리 비용의 산정 등) ① 법 제122조제2항에 따

른 오염물질 수거처리 비용은 오염물질의 수거·운반·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오염물질의 종류별로 톤, 또는 m³ 단위로 산정하여 부과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수거처리비를 부과할 경우에는 종류별 수거량과 부과금액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하며, 납부기간은 통지한 날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.

③ 오염물질의 수거처리 비용은 현금, 신용카드, 직불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오염물질 수거처리 비용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·도지사 또는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.

⑤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이 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 수거처리 비용의 부과 및 징수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경우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·운영기준) ① (생략)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·운영자는 오염물질을 수거·처리할 경우 오염물질을 발생시킨 자에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거·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. <u><신 설></u>	제23조(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·운영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제83조의2(오염물질 수거처리 비용의 산정 등) ① 법 제122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 수거처리 비용은 오염물질의 수거·운반·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오염물질의 종류별로 톤, 또는 m³ 단위로 산정하여 부과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수거처리비를 부과할 경우에는 종류별 수거량과 부과금액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하며, 납부기간은 통지한 날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. ③ 오염물질의 수거처리 비용은

현금, 신용카드, 직불카드 및 정
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의
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
정한 사항 외에 오염물질처리
비용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세
부사항은 시·도지사 또는 해양
환경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.

⑤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이 제
4항에 따라 오염물질처리 비용
의 부과 및 징수방법에 관한 세
부사항을 정할 경우 미리 해양
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
다.